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제출년월일 : 2002. 3.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 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애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 법령애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함(안 제27조의 2)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6월 1일

○납 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규정 신설(안 제36조)

다.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을 조정함(안 제50조제1항)

○신고일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5월 31일까지

라. 도축세의 시가 결정(안 제64조)

○중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결정 ⇒ 시장이 결정

마.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함(안 제90조)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 6월 1일

○납 기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6일 ~ 7월 31일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 참고자료(도세정 13400-13210, 2001. 12. 14) 1부

나.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42조중 “제200조”를 “제201조”로 한다.

제43조중 “제201조”를 “제202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제156조”를 “제152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59조”를 “제153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제167조”를 “제157조”로 한다.

제49조중 “제166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고, “제164조”를 “제15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90조중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매년 6월 16일~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로 한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6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36조(납세의무자) ①</p>
<p><신설></p>	<p>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제201조.....</p>

현	행	계	정	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제202조·····
제45조(과세표준) ① <생략>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	제45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2조····· ③·····

현행	개정안
<p>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④ <생략></p>	<p>.....</p> <p>.....제153조.....</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p> <p>.....제157조.....</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49조(수시부과).....</p> <p>.....제156조.....</p> <p>.....</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p> <p>.....5월 31일.....</p> <p>제154조.....</p> <p>.....</p>

현			행			개			정			안		
<p>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p>② <생략></p>						<p>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p> <p>.....</p> <p>.....시장이 결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p> <p>.....</p> <p>.....</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0일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p>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p>						<p>제91조(세율).....</p> <p>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p>								

관인생략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950 - 3712 /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서재규 사무관 안기성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13210
시행일자 2001.12.14 (10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발 용 시장.군수
참 조 세정담당과장

선	과장	가장	지	
람	일자	2001.12.14	시	
점	시간	오전 10:42	결	당
수	번호	12178	재	당
	처 리 과	세무과	공	당
	담 당 자	홍기현	람	당
	심사자		심사일	

재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 참고자료 송부

200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세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본 자료를 참고하여 시.군세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군세조례개정 참고자료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서재규

시·군세조례개정 참고자료

- 이 자료는 200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시·군세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 입니다.
- 이 자료는 예시로 제시한 참고자료이므로 각
시·군의 현행 조례 및 개정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게 재정리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
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경상북도○○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①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42조중 “제200조”를 “제201조”로 한다

제43조중 “제201조”를 “제202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제156조”를 “제152조”로 하고 제3항중 “제159조”를 “제153조”로 한다

제47조중 “제167조”를 “제157조”로 한다

제49조중 “제166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1월31일”을 “5월31일”로 하고 “제164조”를 “제15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이 결정한다

제90조중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6월 16일~6월 30일”을 “7월 16일~7월 31일”로 한다

제91조중 “1000분의 〇”를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〇”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상북도○○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제36조(납세의무자)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u><신 설></u>	제36조(납세의무자) ①-----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농업소득금액·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제201조-----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 제201조-----

현 행	개 정 안
<p>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생략)</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재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④(생략)</p>	<p>제45조(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p> <p>②-----</p> <p>제152조-----</p> <p>③-----</p> <p>----- 제153조-----</p> <p>④(현행과 같음)</p>
<p>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p> <p>----- 제157조-----</p> <p>-----</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49조(수시부과) ----- ----- ----- 제156조 ----- -----</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 5월 31일 ----- 제154조 ----- ----- ②(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군수)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p>②(생략)</p>			<p>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 시장(군수)이 결정한다. ----- ②(현행과 같음)</p>		
<p>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0일	-----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	-----	-----
<p>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〇로 한다.</p> <p>※ 도시계획세 세율은 제한세율임</p>			<p>제91조(세율) -----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〇 -----</p>		

관 련 법 령(발췌)

【지방세법】

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 구법 제20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02조(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 구법 제201조(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시행시행령】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동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 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양곡매입 가격 중 예비 2등급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농업소득세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④ 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 구령 제156조(수입금액의 범위)

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①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 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재재료비

10. 수리비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입차료

13. 광열비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판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전의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 구령 제159조(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제154조(신고와 납부)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신고서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구령 제164조(결정과 징수)

제156조(수시부과) ①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 결정 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구령 제166조(수시부과)

제157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 구령 제167조(농지의 변동신고)

【영주시세조례】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